

최전방 부대 동계패딩 보급...급식 수준 대폭 개선

국방·병무·보훈 분야

국방부가 내년부터 군 장병들의 복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전방 부대에 패딩형 동계점퍼를 보급하고, '짬밥'이라고 폄하되던 급식의 질도 대폭 개선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를 정리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방·병무·보훈 분야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정리해봤다.

◇국방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피복류를 보급한다. 육군 전방부대와 해군·해병대 서북도서 부대, 공군 방공·관제 부대 등 격오지 근무 장병에게 패딩형 동계점퍼가 보급된다. 춘추운동복은 기존 1벌에서 2벌로 늘어난다. 기능성 러닝과 드로트형 속옷도 각 6매에서 각 8매로 늘린다.

▲장병 복식 향상을 위한 급식 혁신으로 브런치 자율메뉴, 복수메뉴, 병사식당 외 급식기회(출타외식, 외부음식 배달, 푸드트럭 포함) 부여 등으로 추진한다. 급식 시기는 부대별 운영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유급지원병 처우 및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유급지원병 보수를 일반하사 보수체계와 동일해 월 63만원(유형1 기준 182~245만원) 인상하고, 정근수당과 실적수당 등도 지급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유급지원병이

6~48개월로 원하는 만큼 연장해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가 개선된다.

▲군인도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연수할 때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도록 해외동반 휴직이 허용된다. 1월부터 시행되며 휴직 기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 휴직 기간은 의무복무 및 징급 최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 기간에는 봉급이나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

▲병과 입무에 맞게 병과 명칭도 바뀐다. 일제 강점기 때 유래한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현병은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군사경찰' 병과로 개정된다.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에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진 '정훈(政訓)'은 '공보정훈'(公報精訓) 병과로 변경된다. 시설은 '공병' 병과로 육군 화확은 생물학과 핵 분야까지 포함한 '화생방' 병과, 인사행정은 '인사' 병과로 각각 바뀐다.

▲군 범죄 피해자나 사망자 유족을 위해서는 의무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영내에서 발생한 가혹행위나 집단 폭행 및 왕따 등의 피해자를 우선 지원한다. 수사과정 및 재판 절차에서 외부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변하고, 맞춤형 법률지원을 통해 제2차 피해를 방지해 피해자 인권보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현재는 전사·순직자, 전투유



공자 중 장교로만 한정했던 특별징급은 국가를 위해 특별한 공적으로 헌신한 군인 모두에게 특별징급 기간에 도달한 사람은 징급 선발 추천권을 부여한다.

▲부사관 징급 선발 대상자 제외 사유를 삭제해 징급 최저 복무기간에 포함될 권리를 보장한다. 군사법원에 기소되거나 행방불명, 군무질서 중인 자라 하더라도 제적되기 전까지는 현역신분이 유지되며 징급 최저 복무기간에 달하면 징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된다.

◇병무

▲내년부터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모바일 앱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모바일 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병무청 앱과 카카오톡을 통해 통지서를 받아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줄이기 위해 1월 임명대상자부터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거나 졸업예정이라는 이유로 한 임명일자 연기가 제한된다. 대학원 진학 예정 사유로 28세 이상자는 연기가 가능하다.

▲가계를 책임져야 할 병역의무자가 생계 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 받을 경우 4인 가족 기준 재산액 6860만원 이하, 월 수입액 184만514원 이하로 기준이 변경된다. 재산 기준과 소정의 부양비율(부양의무자 1인 대비 피부양자 수)을 충족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재산액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월수입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해 각각 액수를 조정했다.

▲병역관정검사를 받는 쌍둥이 병역의무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지방병무청에 홍채인식기가 설치된다. 그동안 사진만으로 식별이 어려운 쌍둥이는 대구에 있는 신체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2019 국방·병무

군 범죄 피해자·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2019년 상반기) 대학원 진학 예정, '졸업 예정' 사유 임명일자 연기 제한 (2019년 1월1일 이후 임명대상자부터) 대학원 진학 예정 28세 이상자 연기 제한 출업 예정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 범위 내 연기	유급지원병 처우인사제도 개선 보수 인상 (19년 1월) (유형1) 월 182만원 → 245만원 (63만원증가) 인사제도 개선 (19년 7월) 장기복무 희망시 연계가 가능 복무기간 현 6~18개월 → 6~48개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모바일 발송 (2019년 1월1일) 우편 e-mail 발송 병무청 앱 카카오톡 알림톡
---	--

자료: 기획재정부

급 중앙신체검사소에서 홍채인식을 통해 신분확인을 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사회복무요원의 조기 병역이행과 소집적체를 해소하고자 새해부터 매년 5000명씩, 3년간 1만 5000명을 추가 배정한다. 주요 배치 기관은 경찰관서 민원안내 지원 등에 3617명,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과 장애인 활동 보조에 1604명, 구조·구급 활동 보조와 소방 안전체험 교육에 350명이다.

▲병역관정검사를 받고 질병 악화 등으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때는 주소지와 실거주지 지방병무청을 비롯해 최초 검사받은 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역의무자의 병역 이행시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 기준에 상응하게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보훈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기 위해 통일된 디자인과 문구를 담은 국가유공자 명패를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달아준다. 2020년까지는 상이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2021년에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독립유공자 16인과 광복군 합동 묘소가 있는 서울 수유리 애국선열묘역은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 3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묘역 전담 관리자를 뒤 상시 점검과 벌초·묘역 훼손 복구 등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은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해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관련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해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식을 거행한다. 국호와 임시헌정을 제정하고 임시정부 내각을 구성한 날을 기념일로 했다.

맹견 목줄 안맬땐 300만원 과태료·AI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내년부터 맹견과 외출 시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단행하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발생 농가 반경 500m에서 3km까지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내놓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9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살펴봤다.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 만 14세 이상이어야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수 있으며, 이때 목줄 또는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1년 마다 3시간씩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맹견을 포함한 반려견이 사람에게 신체적인 해를 가했을 때에는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 조치 할 수 있고,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발각되면 최

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및 농업정책보험 지원 확대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은 연금 보험료의 절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만3650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등 57가지를 추가하고 영세 농가의 농업인안전보험료 국고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인다.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농지매입비촉 사업도 신청 가능해진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 내년 2월부터 유해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경영체에 포획트랩 설치 비용을 국비와 지방비 40%씩 매칭해 지원한다.

◇AI 발생시 방역조치 범위 확대 =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발생 농가 반경 3km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하게 된다. 단 지형적·역학적 요인으로 살처분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농식품부에 요청하면 방역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검토해 최종 결정한다.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산별포장업(GP) 통한 유통 의무화 = 내년 4월 28일부터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계란은 식용란산별포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해야 한다. 다만 등 록된 해외 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된 달걀을 유통·판매하거나 식용란수집판매업 등록을 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썬) 의무를 이행하는 유기·동물복지 인증농가가 적대형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GP 유통 의무가 제외된다.

◇통통식품명인, 기능전수 활동 지원 = 소득 불안정과 같은 열악한 전수여건 탓에 전수자 양성에 어려움을 겪는 식품명인에게 전수 활동 실적에 따라 연간 최고 6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식품명인 명칭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개정한다.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추가 및 동력예취기 면세유 공급 확대 = 시설재배 농업인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에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추가한다. 현재는 등유, 중유, 액화석유가스(LPG), 부생연료유 1호(등유)만 인정하고 있다. 동력예취기의 연간 공급량도 52.51에서 75.01로 늘린다.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 및 농촌 유희시설을 활용한 창업 공간 지원 = 귀농·귀촌 신혼부부와 1자녀 이상 양육가정에게 5년 이상 장기

2019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농림해양수산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 ● 귀농귀촌 신혼부부·1자녀 이상 장기 임대주택 지원 (4곳, 120호) ● 공동 육아나눔 활동 공간 조성 지구당 1개동, 4동 ●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지구당 1개동, 4동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 노지채소 5개(배추, 무, 당근, 호박, 파) 신규 도입 AI 발생시 방역조치 범위 확대 - 발생농장 반경 500m 예방적 살처분 → 3km 수산식품업 인상 - 아가미 60만원 → 65만원 골비, 생골 품목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 대형마트 우선, 연차별 확대 산지 내 태안개발단지 시설 억제 - 지역 변경인가 산지로 환원하는 산지일시사용제도로 전환	계란의 위생·안전관리체계 강화 - 발생농장에 판매하려는 달걀은 식용란산별포장에서 선별·포장 처리 농촌 창업 공간 지원 - 농촌 지역 유희시설을 리모델링해 창업공간 조성·재공 어업인안전보험 산형제 출시 - 유족급여금 (1억원) → (1억2천만원) - 장제급여금 (1억원) → (1억2천만원) 등 - 어업인안전보험 국고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보조율 50% → 70%
--	--

자료: 기획재정부

임대하는 공공주택을 4개 시·군 총 120호 규모로 조성한다. 공동 육아나눔활동이 가능한 시설 4동(지구당 1개동)과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4동(지구당 1개동)도 만든다. 농촌 유희시설을 창업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창업 희망 청년들에게 제공한다.

장애등급제 내년 7월 폐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강화...사회서비스원 설립



내년 7월부터 1~6급으로 나뉘던 복지서비스를 차등 제공해온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

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중·저·고 1~6급으로 구분한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기존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에 해당한다.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장애 정도에 상관 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발달 장애인도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시군구에선 위기가구 전문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발달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편의와 행동문제 치료를 전문적으로 지원

하는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현재 2곳에서 내년 8곳으로 늘어나 전국 권역별로 운영된다.

중증의 성인발달장애인과 비장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해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내년 3월과 7월에 도입한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하루 4시간씩 월 88시간까지 서비스 이용권이 제공된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내년 하반기부터 발달장애 학생 4000명이 하루 2시간씩 월 4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역할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경우는 생계급여 때 적용을 받지 않는다.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및 시설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도 제외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 확대를 위해 내년 기준 중위소득(452만→461만400원)과 최대 생계급여액(4인 가구 135만6000→139만4000원)이 인상돼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주거급여는 내년 기준 임대료 인 상(5.0~9.4%)으로 급여가 확대되고 지원대상도 확대(기준중위소득 43→44%)된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 경감 지원액 확대, 비급여 급여화 등 보장성이 강화되고 교육급여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민간중심으로 제공된 사회서비스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한다. 내년 4개 시·도를 시작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향상, 시설·지역간 격차 해소, 종사자들의 일자리 안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한다.



하북부 초음파 등 건보적용 확대...청년 건강검진 혜택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4월 간담(승계)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소장·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20~30대 직장인·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 등 719만 명이 내년부터 검진 혜택을 받는다. 청년세대 우울증 조기 진단을 위해 현재 40·50·60·70세 때마다 시행하는 정신건강검사를 항목을 20세와 30세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